

교원인사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정의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서울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원의 구분과 직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제 전임교원과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계약제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계약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④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초빙강의교수, 객원교수, 특임교수, 연구교수, 교환교수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 (교원의 임무)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1항에 따라 교원에게 특정임무를 주로 수행케 하는 경우, 부여한 임무와 역할 등에 따라 당해 교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계약제 전임교원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임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강의전담교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의전담교수 : 주로 교육·지도의 임무를 수행하되 학문연구 등의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2. 연구전담교수 : 주로 학문연구의 임무를 수행하되 교육·지도 등의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3. 산학협력중점교수 : 주로 산학협력의 임무를 수행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등의 임무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③ 교원의 임무 중 특정 임무를 주로 수행케 하기 위하여 교원을 신규로 임용하거나 기존의 교원 중 임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지정하여 당해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관계법령, 「정관」 및 본교 제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교육이념 구현을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단, 제2조제2항이 정하는 계약제 교원의 경우에는 제23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9조, 제52조, 제5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규정 및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 (교원인사위원회) ① 「정관」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 (준용) 교원 인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 2 장 임 용

제 1 절 임용시기 및 임용기간, 임용절차 등

제7조 (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등은 매 학년도 3월 1일 및 9월 1일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일자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임용기간) ① 정년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단,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직위에 관계없이 2년으로 한다.

1. 삭제
2. 조교수 : 6년
3. 부교수 : 6년
4.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제 교원이 동일직위로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동일직위 최대근무연한에서 이미 재직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부여받는다. 단,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자를 최초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4년의 임용기간을 부여한다.

③ 계약제 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계약제 교원 중 연구전담교수의 임용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하며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인 외국인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 정년제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승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일로부터 승진 직위에 대한 임용기간을 다시 부여한다.

⑤ 임용기간에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9조 (임용의 발효)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의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단, 임용이 사무상의 오류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발령을 취소하거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교원의 임용일자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망한 경우
2.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3.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징계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11조 (임용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② 교원은 「정관」 제43조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정하여 임용한다.

③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은 제20조 내지 제21조에 따라 재임용 할 수 있다.

- 제11조의2 (임용절차) ① 교원이 정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교수 직급으로의 정년보장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년보장심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 ②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는 교원을 우리 대학이 교수직급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을 보장할 수 있다.
- ③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절 신규임용

제12조 (자격) ① 본교에 신규임용되는 전임교원(이하 ‘신임교원’ 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단, 예체능계열, 외국인, 기타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그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제14조1항에 해당하는 연구 및 교육경력을 갖춘 자
 4. 「정관」 제43조제3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는 자
- ② 초빙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실적, 실무경력 등의 특정조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분야별 특정조건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3조 (신임교원의 임용) ① 신임교원 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신규임용시행세칙」을 따른다.

- ② 신임교원은 임용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③ 신임교원의 재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26조를 따른다.

제14조 (신임교원 임용자격의 기준) ① 신임교원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가 최소한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1. 조교수 : 4년
2. 부교수 : 7년
3. 교수 : 10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연수를 환산하는 기준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임용직위) ① 신임교원의 임용직위는 조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정규 4년제 대학의 정년제 교원으로서의 다음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직위로 임용할 수 있다.

1. 조교수(3년차) : 직전대학의 조교수 교육경력 4년 이상 또는 부교수 교육경력 2년 미만인 자(전임강사 교육경력은 조교수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2. 부교수 : 직전대학의 부교수 교육경력 2년 이상 또는 직전대학 교수 경력자

② <삭제>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제 신임교원의 임용직위는 조교수로 한다.

④ 특별채용한 교원 또는 전공분야에서의 업적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게 상위 직급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6조의2 (초임호봉)** ① 정년제 신입교원의 초임호봉은 연구 및 교육경력을 고려하여 확정하며 초임호봉확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 ② 제14조제2항과는 달리 정년제 신입교원 초임호봉확정에 필요한 연구 및 교육경력연수는 별표 1의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에 의하여 산출한다.
- ③ 계약제 신입교원의 초임호봉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 제17조 (임용계약)** ① 신입교원은 「정관」 제43조제4항에 의거하여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 ② 임용계약은 개별적으로 체결하며, 서면으로 작성하되 임용기간, 소속 및 직위, 보수, 의무, 업적평가,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기타 임용조건 등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③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8조 (의무)** ① 신입교원은 계약기간 중 본교 교원으로서 학내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적극 협조하여 본교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 ② 신입교원은 신앙인으로서 교회 신앙생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 제19조 (금지)** ① 신입교원은 사전승인 없이 계약기간 중 타 기관에 출강하거나 타 기관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② 신입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수업기간 중에는 해외여행이 허락되지 아니한다. 단, 학술연구, 공무수행,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신입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본교의 모든 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다.
- ④ 신입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교원임용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⑤ 신입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 ⑥ 신입교원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 「정관」 제44조의 제5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경우에는 휴직할 수 없다.

제 3 절 재임용

- 제20조 (재임용 절차)** ① 재임용 평가시기는 매학기, 연 2회로 한정하며, 재임용 기준일 직전의 임용기간을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 ②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임면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교원이 상기기간 내에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한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교원인사위원회가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한 교수업적평가결과를 기초자료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계약이행사항 여부 등의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다. 심의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재임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4. 본교의 교육이념 및 학교 제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⑥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재임용 조건) ① 재임용을 위한 평가는 당해 교원의 평가대상기간 중의 교육, 연구, 봉사 영역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재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9조에서 정한 각 영역별 연간소요점수가 재임용 평가대상기간만큼 합산한 점수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단, 교육영역은 평가대상기간 중 마지막 학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소요점수를 합산한다.

③ 평가대상기간 중 교육집중교수에서 일반교수로(또는 일반교수에서 교육집중교수로) 교수구분을 변경했을 때에는 변경 전·후로 각 교수구분별 소요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재임용에 필요한 소요점수가 된다.

④ 신입교원의 재임용은 최초임용직위와 관계없이 임용기간 중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 요구하는 신입교원의 영역별 소요점수 및 [별표2]의 신입교원 재임용 영역별 조건을 충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사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한다. 단, 봉사영역의 소요점수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재임용 평가 대상자는 위 실적 이외에 법인 이사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제 교원의 재임용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재임용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되, 계약제 교원 중 강의전담교수는 최초임용일로부터 6년까지는 단과대학별 강의평가결과 하위 2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4.0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6년 이후에는 단과대학별 강의평가 결과 하위 4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4.2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인 외국인 교원의 경우에는 임용시점과 상관없이 단과대학별 강의평가결과 하위 2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4.0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 4 절 승진임용

제22조 (승진소요년수 및 동일직위 최대근무연한) ① 정년제 교원의 직위별 최소 승진소요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시 : 6년
3.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 : 5년

② 정년제 교원이 승진되지 아니하고 동일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기간의 만료와 더불어 당연 퇴직한다.

1. 조교수 : 9년

2. 부교수 : 8년

③ 계약제 교원은 계약시 별도로 정한 승진 조건을 충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사평가를 통과하면 승진할 수 있다. 단, 최소 승진소요년수 및 동일직위 최대근무연한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승진임용 절차 및 조건) ① 승진임용 평가시기는 매학기, 연 2회로 한정하며, 신규임용 또는 현직위 승진학기로부터 승진기준일 직전학기까지를 평가대상기간으로 한다. 단, 조교수(1년차)로 신규임용된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승진임용을 위한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승진임용이 되기 위해서는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9조에서 정한 각 영역별 소요점수 및 [별표3]의 승진임용 연구영역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사평가를 통과하여야 한다. 영역별 소요점수에 관한 기준은 제21조제2항 내지 제3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삭제>

④ 계약제 교원의 승진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 승진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되, 계약제 교원 중 강의전담교수는 단과대학별 강의평가결과 하위 40% 커트라인 점수 이상 또는 강의평가 평균점수 4.2 이상을 획득하여야 한다.

⑤ 승진 평가 대상자는 위 실적 이외에 법인 이사회 또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승진을 위한 평가 및 심사 과정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승진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승진을 위한 최종 결정 이전에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의2 (승진의 유보) ① 승진임용 심사평가를 유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잔여 임용기간 내에서 본인이 승진 조건을 완료한 때에 다시 신청을 통하여 승진임용 심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승진임용 심사평가를 유보하는 교원에게는 유보기간에 비례하는 승진조건을 가산하여 부과하되, 이 때의 업적기준은 유보하는 학기에 대한 교수구분(교육집중교수 또는 일반교수)에 따라 [별표3]을 적용한다.

③ 연구년을 부여받은 교원은 연구년 기간 중에 승진이 유보된다.

제24조 (승진의 제한) ① 교원이 직위별 승진을 위한 최소 승진소요년수에 달하였을지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3. 교원으로서 허가없이 외부 출장한 자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② 교원의 승진 제한에 대한 결정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5조 (승급 및 승급의 제한) 교원의 승급 및 승급의 제한은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제26조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① 교원이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공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순직하였을 때에는 특별승진할 수 있다.

②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1. 연구실적이 지대하여 국가와 사회에 크게 공헌한 때
2.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로와 현저한 업적이 인정될 때
- ③ 교원의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 5 절 보직임용

제27조 (정의) 보직임용이라 함은 직제규정에서 정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장의 직에 보함을 말하며 이의 임면은 다음과 같다.

- ① 학장 및 대학원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② 행정부서의 장 및 대학의 학과(부)장,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부설기관, 부설연구 기관의 장, 교목실장, 도서관장 등을 포함한 기타 보직은 총장이 임면한다.
- ③ 보직의 신설과 폐지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28조 (자격과 임기) ① 제27조제1항의 보직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의 보직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교원의 보직은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유고로 보임된 경우에는 그 임기를 사임시점부터 2년 발령하거나 총장의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아동연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④ 총장은 제2항 내지 제3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보직자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해임동의를 구하거나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 3 장 신분보장

제 1 절 정년 및 퇴직, 면직, 직위해제

제29조 (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이며 정년에 달한 학기의 학기말에 당연 퇴직된다.

제30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당연퇴직) ① 교원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당연 퇴직된다.

- ② 교원이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2조 (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한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6. 학과 또는 직제의 개폐, 정원의 변동과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
-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3조 (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단, 당해 교원이 제20조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제34조 (명예퇴직) ①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원수급계획 및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명예퇴직 신청절차, 심사 및 결정, 명예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명예퇴직규정」을 따른다.

제35조 (직위의 해제) 교원의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 2 절 휴직 및 복직, 파견

제36조 (휴직의 사유 및 기간) 휴직의 사유 및 기간은 「정관」 제44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7조 (근속 통산기간) ① 휴직기간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② 「정관」 제44조제2호, 제4호의 휴직기간과 공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③ 「정관」 제44조제7호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38조 (휴직교원 신분) 휴직교원의 신분은 「정관」 제46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휴직 중 허가없이 타직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휴직교원 처우) 휴직교원의 처우는 「정관」 제47조와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0조 (휴직 및 파견근무의 시행) ① 교원을 국내외의 다른 교육 및 학술 관련기관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총장은 교원을 일정기간 동안 파견할 수 있다.

② 계약제 교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휴직 및 파견근무를 할 수 없다. 단, 정관 제44조의 제1호 내지 제4호, 제7호의 사유에 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직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휴직 및 파견근무의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휴직및파견근무규정」을 따른다.

제41조 (복직) 휴직교원의 복직은 「정관」 제46조제2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단, 휴직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면권자가 직권으로 당해 교원을 해직할 수 있다.

제 4 장 상 별

제42조 (표창)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을 때
2.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방지한 뚜렷한 공로가 있을 때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만10년, 만20년, 만30년 간의 근속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때
4. 교육 및 연구실적이 탁월할 때

제43조 (표창의 결정 및 방법) ① 표창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② 표창으로는 표창장, 표창패,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특별승급 또는 특별상여금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44조 (징계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요구를 해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 「정관」, 본교 제규정 등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45조 (징계 구분)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으로 한다.

- ① 견책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케 하며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2호의 승급기간을 공제한다.
-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며 「교직원 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2호의 승급기간을 공제한다.
-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그리고 「교직원보수규정」 제7조제1항제2호의 승급기간을 공제한다.

제46조 (교원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보 수

제47조 (보수) ①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 ② 계약제 교원의 보수는 계약에 의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복 무

제48조 (주당책임시수) ① 정년제 교원의 학기별 주당 책임시수는 9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강사료지급규정」을 따른다.

- ② 계약제 교원의 학기별 주당 책임시수는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책무와 역할 등을 고려

하여 책임시수를 추가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9조 (금지사항) ① 교원은 직무와 관계하여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② 교원은 교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원은 교내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배격하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없다.

제50조 (외부출강) ① 교원이 외부 출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 강의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매학기 개강 이전에 출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부 출강은 연구일에 한하여 가능하며 출강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교 주당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 또는 책임시수 경감을 적용받는 보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특강을 제외한 외부 출강을 할 수 없다.

제51조 (해외여행) ① 교원이 연구 및 기타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해외여행신청서를 7일전까지 교무팀으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년 수혜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의 해외여행은 학교수업 및 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고, 학기 중에는 보장계획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여행은 학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고, 그 기간은 총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방학기간 중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해외여행으로 인한 수업결손은 반드시 당해 학기 중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52조 (연구년) ① 정년제 교원의 연구성과를 높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원 연구년 제도를 시행한다.

② 교원 연구년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연구년제도에관한규정」을 따른다.

제53조 (소속변경) 총장은 학문연구 또는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소속 학과(부), 대학(원)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54조 (내부겸직) ① 총장은 교원의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교원으로 하여금 소속기관 이외의 대학, 대학원, 연구소, 부속기관 등 제 기관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다.

② 겸직교원은 원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외에 겸직하는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제55조 (외부겸직) ① 교원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교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교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교원의 외부겸직 신청 및 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겸직허가 시행세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정 <2011 제21차 교무위원회>)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교원재임용 및 승진심사규정, 계약제신임교원인사규정, 교원특별채용규정, 교원임용 시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①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교직원임용규정 중 교원의 임용 및 기타 교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②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비정년제 전임교원은 퇴직시까지의 종전 규정을 따른다.

③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휴직, 파견 중인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휴직, 파견된 것으로 본다.

④ 이 규정의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B)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B)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 1 개정 <2013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항, 제6조 개정, 제8조제1항제1호 삭제, 동조동항제2호 개정,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항번호 변경, 동조제4항을 제2항으로 항번호 변경 및 개정, 제14조 조제목 변경, 동조제1항, 동조동항제2호 및 제3호, 동조제2항 개정, 제15조 삭제, 제16조 조제목 변경, 동조제1항, 동조동항제1호 개정, 동조제2항 삭제, 동조제3항 개정, 제16조의2 신설, 제20조제1항 개정, 제22조제1항제1호 삭제, 동조동항제2호, 동조제3항 개정, 제23조제1항 개정, 동조제3항 삭제, 제55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제3항 신설, 별표 1, 별표 3 개정 <2013 제10차 교무위원회>)

제2조(전임강사 명칭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3항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B)는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로 본다.

② 제2조제3항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교수(B)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③ 전임강사 명칭 폐지 이전에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에게는 부교수 승진에 필요한 조교수 근무 소요연수를 4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제1항 개정, 제23조의2 신설 <2013 제11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별표3 개정 <2013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의2 신설 <2014 제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2, 별표3 개정 <2014 제6차 교무위원회>)

회>)

〔별표 1〕 연구 및 교육경력 환산기준표

구분	경력구분	경력사항	환산율
연구 경력	학위취득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0% ※ 해당 학위과정의 최저수업연한 (최대 3년까지만 인정)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100% ※ 해당 학위과정의 최저수업연한
	연구조교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연구전담조교로 정기적인 보수를 받으며 상근한 경력 ※ 행정, 학사조교 등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조교경력 제외	50%
	연구원	대학·전문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임용권자의 임명을 받아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 연구교수 경력 포함	100% (최대 5년까지만 인정)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관할청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상근한 경력	100%
교육 경력	교원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교원 : 100% ·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 : 50%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제 교원 포함)	5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에 한함.
		유치원 교원 또는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3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에 한함.
	시간강사	대학·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의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	· 주당수업시수 9시간 미만 : 30% · 주당수업시수 9시간 이상 : 50%

구분	경력구분	경력사항	환산율
산업체 (실무) 경력 및 유사 경력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무급, 비상근 공무원 경력 제외) ※ 군 경력은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만을 인정 하되 아래 경력은 제외함. 1. 특례보충역의 해당전문분야 의무종사기간 2. 보충역 중 공익근무요원의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3. 무관후보생 경력	· 공무원 경력 : 70% · 군 경력 : 100%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행정·경영·연구·기술분야에서 전임으로 상근한 경력 ※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따른 공공법인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을 말함.	30%
	민간기업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상법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외국회사 포함)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1.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2.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20%
	종교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종교법인에서 목사로서 상근한 경력	60% ※ 기독교학과 또는 관련과목 담당 교원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 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70% ※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에 한함.

[비고]

1. 삭제
2. 동일한 기간에 둘 이상의 기관에서의 연구(산업체 경력 포함) 또는 교육경력은 그 중 하나만을 인정한다.
3. 상기 경력 환산기준표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력만을 신입교원의 연구 및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4. 상기 경력 환산기준표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별표 2〕 신입교원 재임용 영역별 조건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미디어대학	미술대학
연구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 SSCI, SCI 1편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 SSCI, SCI 1편	등재(후보) 6편 또는 SCI 2편 ※ 1.SCI 1편은 필수 (비고2-③ 해당학과 제외) 2. 주/교신저자만 인정	등재(후보) 6편 또는 SCI(E) 2편 ※ 1.SCI(E) 1편은 필수 2. 주/교신저자만 인정	등재(후보) 3편 또는 등재(후보) 1편 + 개인전 1회 또는 개인전 1.5회 (개인전 1회 + 단체전 2회)
교육	1. 강의평가 단과대학별 하위 20% 컷라인점수 이상 또는 개인평균점수 4.0 이상 2. 취임강의 1회 이상(신규임용 2학기 이내에 시행해야 함)				
봉사	학교 공식행사 참석율 80% 이상 ※ 학교 공식행사 : 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입학전형일, 교수회의 및 교수연수회				
비고	1. 상기 학술지의 편수는 공동연구업적 인정비율에 따라 100%가 될 경우를 1편으로 인정 2. - 자연과학대학 ①수학과 : 정보미디어대학기준 적용 ②체육학과 : 사회과학대학기준 적용 ③식품영양학과(단체급식/급식경영), 원예생명조경학과(조경설계), 의류학과는 제외 - 자연과학대학 기준을 적용하되, SCI 1편 = 등재(후보) 3편으로 대체 가능 - 미술대학 ①개인전과 단체전은 상호환산인정불가 - 교양학부 : 학문분야에 따라 유관 단과대학기준 적용 -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사회과학대학기준 적용 3. ①SCIE 1편은 SCI 0.8편으로 인정. 단, 정보미디어대학은 SCIE 1편을 SCI 1편으로 인정 ②A&HCI, SCI, SSCI는 상호대체인정 ③SCOPUS 1편은 등재지 1편으로 인정				

[별표 3] 승진임용 연구영역 조건

승진직위	소요년수	구분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정보미디어대학	미술대학
조교수↓부교수	4년 ※ 조교수(1년차) 신규임용교원의 최초임용기간(2년)은 승진임용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비고 4참조)	교육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SCI 1편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SCI 1편	SCI 2.5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SCI(E) 1.5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등재(후보) 3편 또는 등재(후보) 1편 + 개인전 1회 또는 A&HCI,SSCI,SCI 1편 또는 개인전 1.5회 (개인전 1회+단체전 2회))
		일반	등재(후보) 4편 또는 A&HCI,SSCI,SCI 1.3편	등재(후보) 4편 또는 A&HCI,SSCI,SCI 1.3편	SCI 3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SCI 2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등재(후보) 4편 또는 등재(후보) 2편 + 개인전 1회 또는 A&HCI,SSCI,SCI 1.3편 또는 개인전 2회
부교수↓교수	5년	교육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SCI 1편	등재(후보) 3편 또는 A&HCI,SSCI,SCI 1편	SCI 3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SCI(E) 1.5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등재(후보) 3편 또는 등재(후보) 1편 + 개인전 1회 또는 A&HCI,SSCI,SCI 1편 또는 개인전 1.5회 (개인전 1회+단체전 2회))
		일반	등재(후보) 5편 또는 A&HCI,SSCI,SCI 1.3편	등재(후보) 5편 또는 A&HCI,SSCI,SCI 1.3편	SCI 4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SCI(E) 2편 ※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	등재(후보) 5편 또는 등재(후보) 1편 + 개인전 2회 (등재(후보) 3편 + 개인전 1회) 또는 A&HCI,SSCI,SCI 1.3편 또는 개인전 2.75회 (개인전 2회+단체전 3회))
비고			1. 상기 학술지의 편수는 공동연구업적 인정비율에 따라 100%가 될 경우를 1편으로 인정 (공동연구업적 인정비율 :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름) 2. · 자연과학대학 ① 수학과 - 정보미디어대학기준 적용 ② 체육학과 - 사회과학대학기준 적용 ③ 식품영양학과(단체급식/급식경영), 원예생명조경학과(조경설계), 의류학과 - 자연과학대학기준을 적용하되, SCI 1편 = 등재(후보) 3편으로 대체 가능 (단, 조교수→부교수/부교수→교수 승진시에는 SCI 1편에 상응하는 등재(후보) 3편 이상이 주/교신저자여야 함) · 정보미디어대학 : 콘텐츠디자인학과 조교수→부교수/부교수→교수(일반교수) 승진시에는 A&HCI/SCI(E)/SSCI 2편 또는 A&HCI/SCI(E)/SSCI 1편 + 등재(후보) 3편 조교수→부교수/부교수→교수(교육집중교수) 승진시에는 A&HCI/SCI(E)/SSCI 1.5편 또는 A&HCI/SCI(E)/SSCI 1편 + 등재(후보) 1.5편 (단, A&HCI/SCI(E)/SSCI 1편이상은 주/교신저자여야 함) · 미술대학 : ① 개인전과 단체전은 상호환산인정 불가 · 교양학부 : 학문분야에 따라 유관 단과대학기준 적용 · 특수치료전문대학원 : 사회과학대학기준 적용 3. ① SCIE 1편은 SCI 0.8편으로 인정. 단, 정보미디어대학은 SCIE 1편을 SCI 1편으로 인정 ② A&HCI, SCI, SSCI는 상호대체인정 ③ SCOPUS 1편은 등재지 1편으로 인정 4. 이 조건표에서의 조교수는 최초임용기간(2년)이 만료된 후 재임용된 조교수를 의미함. (조교수(1년차)로 신규임용된 교원의 최초임용기간은 승진임용 평가대상기간에서 제외하며 최초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음) 5. 조교수(3년차) 또는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교원은 최초임용기간을 승진임용 평가대상기간에 포함하되 최초임용기간 동안의 연구업적(학술지 편수)의 1/2을 인정함.				

〔별표 4〕 경과조치

승진학기	경과조건
2011-2, 2012-1	개정 전 승진 조건
2012-2	개정 전 승진 조건 2/3 + 개정 후 승진 조건 1/3
2013-1, 2013-2	개정 전 승진 조건 1/2 + 개정 후 승진 조건 1/2
2014-1, 2014-2	개정 전 승진 조건 1/3 + 개정 후 승진 조건 2/3
2015-1 이후	개정 후 승진 조건

주1) 2011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신입교원의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조건을 적용한다.

주2) 2011년 3월 1일 이전에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승진한 자로서 부교수 또는 교수 승진대상인 경우에는
〔별표 4〕의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주3) 개정 전 승진조건

대학	조교수→부교수, 부교수→교수승진
인문대학/사회과학대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편 이상
자연과학대학	SCI(E) 2편 이상
정보미디어대학	SCI(E) 또는 SSCI 중 2편 이상
의류학과	SCI(E) 2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6편 이상
미술대학	공인된 국내외 국제전(개인) 참가 또는 국내 개인전(A급) 1회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2편 이상 또는 실용화된 작품으로서 공인된 공모전(*) 수상작 중 2점 이상

* 공인된 공모전 수상

(국제) 미국IDEA Award, 독일IF Award, 일본GD Award, 동경타임디렉터스클럽공모전,
브르노 국제그래픽 비엔날레, 뉴욕페스티벌

(국내) 한국산업디자인상,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전, 코리아 국제포스터비엔날레,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공모전